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6.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 ② “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 ③ “계열사”라 함은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④ “전산설비”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 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 ⑦ “전산사고”라 함은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⑧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의 인가등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관련 법령상 인가등의 결정 기한에는 해당 위탁의 적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외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간에 체결하는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제2조제6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으로 본다(기타 금융회사가 국외 지점과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①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미 위탁된 경우라도 최근 3년 이내에 전단의 사유로 인한 제재 또는 처벌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감독권한 행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본조제2항·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를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시 고려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외위탁이 제한되는 전산설비는 제외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①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의 국외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
2.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
4.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
5. 상기 각 호의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전산 보안설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설비 위탁 신청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2.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구비
3.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구제절차 구비 여부
4.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통과 여부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검사)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전산설비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탁운영기준’,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최초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운용되고 있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나

제약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별표1]

표준계약내용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권리

가. 제3의 수익자로서 본 계약에 명시된 위·수탁회사의 의무에 대응되는 계약상의 권리

나. 본 계약에 따른 위·수탁회사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 및 권리침해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2. 위탁회사의 의무

가. 위탁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국내 관련법령의 준수 및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

나. 정보주체에 대한 금융정보 이전 사실, 이전 대상, 목적 등 중요 사항 고지 의무

다. 정보주체의 금융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및 정보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에 응할 의무

라.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계법령의 요구사항 및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수탁회사를 선정할 의무

마. 수탁회사가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및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점검하는 등 감독할 의무

3. 수탁회사의 의무

가. 위탁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 규정 등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준수 의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요구사항 및 (대한민국)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나. 이전받은 정보는 계약의 목적과 범위내에서만 이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에의 양도·이전은 금지

다. 이 계약 및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나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의 누설 또는 제공 금지

라. 전산사고, 정보유출사고,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 공개요구시 위탁회사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위탁회사의 지시 및 위탁회사의 감독기관의 자료요구, 감독·검사 요구 등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바. 문서·시설·인원 등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연 1회 이상의 보안 교육

사. 계약 종료시 이전받은 금융정보를 반환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소거할 의무

4.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의무

- 가. 계약서 사본의 감독기관 제출 의무
- 나. 위탁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료 요구 및 감독·검사 요구에 대한 위·수탁회사의 협조 및 성실한 수용의무
- 다. 양 당사자간 계약 변경시, 위탁회사의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변경사실 통보 의무

5. 의무위반의 효과

- 가. 정보주체 및 이용자가 위·수탁회사의 의무위반 또는 정보유출, 전산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수탁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특히, 위탁회사의 의무위반 또는 정보유출, 전산사고 등으로 정보주체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 나. 수탁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업무위탁이 위탁의 근거가 되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위탁회사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정보이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가능

6. 해외 위탁시의 적용 특례

- 가. 계약서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한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 효력 가짐
- 나. 동 계약 관련 정보주체·이용자와 위·수탁회사간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및 해석으로 처리 금융이용자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금융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감독기관의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